

신청번호

지역보험료·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

정산 대상자	성명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증번호	
	(휴대)전화번호	처리 결과 회신 방법	<input type="checkbox"/> 알림톡 <input type="checkbox"/> 문자(SMS) <input type="checkbox"/> 전자문서 <small>※ 미선택 또는 중복선택 시 알림톡으로 전송 ※ 전자문서의 경우 기한 내 미열람 시 종이 우편 발송</small>	
대리인	<small>※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내방 시에만 가능 / ※ 위임장, 위임자(신청인)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 제출 필수</small>			
	성명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위임 서류 제출 여부	Y / N
정산 및 조정 신청	소득 조정 대상 사업장 명칭	조정신청 사유	<input type="checkbox"/> 폐업 <input type="checkbox"/> 휴업 <input type="checkbox"/> 퇴직(해촉) <input type="checkbox"/> 해촉(실시간 소득) <input type="checkbox"/> 연금소득감소 <input type="checkbox"/> 소득금액증명 등 <input type="checkbox"/> 소득 증가	
	정산 및 조정 적용 기간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(2개 연도 신청 시 모두 체크)	정산 대상 보험료	정산 예정 시기	조정 기간
	2025년 1~12월분 보험료 <input type="checkbox"/> (2025년 발생소득) <small>※이자,배당,사업,근로,연금,기타소득 정산</small>	2026년 11월	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~ 그 해 12월까지 <small>※ 아래의 경우, 해당 월부터 적용</small> - 매달 1일 신청 시 : 그 달부터 적용 - 매년 10월 신청 시 : 그 달부터 적용 - 7월, 11월~1월에 그 달 1일부터 그 달 보험료의 납부마감일 사이에 신청 시 : 그 달부터 적용 (7월은 조정사유가 소득금액증명만 해당) - 자격의 취득 또는 변동(지역↔직장)이 있는 경우 : 이에 따른 보험료를 부담 해야하는 최초의 달부터 적용	
	2024년 1~12월분 보험료 <input type="checkbox"/> (2024년 발생소득) <small>※사업, 근로소득 정산 ※자격 취득·변동의 경우에 해당하며, 지사 또는 고객센터 상담 이후 선택 가능</small>	2025년 11월		
※ (제출서류) 폐업·휴업사실증명, 근로소득자의 퇴직증명서, 소득금액증명 등 * 팩스·우편 신청 시 신분증 앞면 사본 제출 필수 ※ (취소기간)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취소 가능, 정산 실시 이후에는 취소 신청 불가				

안내사항

1. 소득을 조정 신청하실 경우 소득 부과 보험료를 우선 조정하고, 그 해의 확인소득이 다음 해 11월 국세청 등 자료로 확인되면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납부한 보험료외의 차액을 추가 부과 또는 환급할 수 있습니다. ※ 조정 받은 기간에 한정하지 않고, 조정 적용 연도 전체기간(1~12월분) 보험료를 정산	확인 <input type="checkbox"/>
2. 2025년 보험료의 경우 이자·배당·사업·근로·연금·기타소득 중 한 종류로 조정 받더라도 전체 소득의 합산액으로 정산합니다. ※ 2024년 보험료의 경우 사업·근로소득 중 한 종류로 조정 받더라도 사업소득⊕근로소득 합산액으로 정산	확인 <input type="checkbox"/>
3. 보험료 조정 이후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로 상실, 보험료 경감을 받은 경우 소급 해지될 수 있습니다.	확인 <input type="checkbox"/>
4. 소득 정산 신청연도 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.	확인 <input type="checkbox"/>
5. 공단은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41조의2에 따라 소득정산 업무를 수행하며,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,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,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에 따라 업무처리를 위하여 귀하의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·이용할 수 있습니다.	확인 <input type="checkbox"/>

신청자 본인은 상기 안내사항에 대해 안내받았으며, 이에 동의합니다.

※ □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, 음영 표시된 칸은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. (앞쪽)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41조의2에 따른 보험료 정산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20__년 월 일

신청인 (대리인)

(서명 또는 인)

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

작성방법	
공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음영 표시된 칸은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. • □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 합니다.
정산 대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 란에는 주민등록등본(외국인등록증)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외국인 등록번호)를 기입합니다. • 휴대전화번호를 기입하고, 처리 결과 회신을 원하는 방법에 √ 표시합니다.
대리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공단 내방 시에만 가능합니다. 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 란에는 주민등록등본(외국인등록증)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외국인 등록번호)를 기입합니다. • 대리인 본인의 휴대전화번호와 신청인과의 관계를 기입합니다. • 위임장, 위임자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을 필수 제출해야 합니다. • 위임장은 지사에 비치되어 있는 서식 또는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의 서식에 위임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.
정산 및 조정신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득 조정 대상 사업장 명칭을 기입합니다. • 해당하는 조정신청 사유에 √ 표시합니다. • 조정·정산하고자 하는 대상 소득의 발생연도 칸의 □에 √ 표시 합니다. • 2개 연도 신청 시 정산 대상 소득 란의 □에 모두 √ 표시 합니다.
안내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동의란 □에 √ 표시합니다. 체크 누락 시 조정 신청 불가합니다. • 신청 연월일, 성명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.(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이 서명)

제출서류

- 폐업증명서, 소득금액증명 등 **소득의 감소 또는 증가가 확인되는 증빙서류** 각 1부.
- 공단 전산으로 확인되는 경우 폐업증명서, **인적용역사업소득자의 해촉(퇴직)증명서** 등 제출 불필요
- 신분증 앞면 사본(팩스·우편 신청 시 필수) 1부.

유의사항 (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)

공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조정 취소는 조정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가능합니다. 단, 정산 실시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. • 보험료 조정 후 피부양자 자격 취득은 조정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직장가입자가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. <p>[기타 고지사항]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아래와 같이 법률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합니다.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목적</th> <th>항목</th> <th>수집·이용 근거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41조의2에 따른 업무처리</td> <td><u>주민등록번호</u></td> <td>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4조(업무 등)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(공단의 업무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2호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목적	항목	수집·이용 근거	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41조의2에 따른 업무처리	<u>주민등록번호</u>	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4조(업무 등)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(공단의 업무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2호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)
목적	항목	수집·이용 근거					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41조의2에 따른 업무처리	<u>주민등록번호</u>	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4조(업무 등)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(공단의 업무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2호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)					